Latest Legal News and Developments from the MENA Region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알타미미 Korea Group 입니다.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는 한 해 되길 기원합니다.

새해 들어 지난 3년 반 동안 단교 중이었던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 이집트 등 4개국이 외교 관계 복원에 합의하고 영공, 육로 및 해상 국경을 다시 개방하였습니다. 그간 카타르와의 교역에 지장을 받을 수 밖에 없던 아국 기업들에게는 실로 환영할 만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동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장기화된 코로나 19 사태와 최근 이란의 국내 선박 억류 등 중동지역 내지정학적 위험으로 인해 아국기업이 중동지역에서 사업활동 시 고려해야 할 요건 역시 점점 더 세분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더하여, 중동 각 국가들은 관련 법•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신설하고 개정하고 있으나, 실제 중동 현지에서 새로운 법안의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 상의 괴리가 존재하여 또다른 불확실성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섯 번째 Korean News Digest가 이러한 불확실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중동에서 현재 사업활동을 영위하시거나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아국 기업 관계자분들께 혜안을 제공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에도 저희 Korea Group은 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중동 전역의 법률 소식을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orea Group 배상

## 주요 연락처



Omar Omar Partner, Head of Transport & Insurance o.omar@tamimi.com





**박이세 변호사** Issey Park Associate issey.park@tamimi.com



하지원 변호사 Jiwon Ha Senior Counsel j.ha@tamimi.com



**강윤정 연구원 Yoon Kang** Paralegal y.kang@tamimi.com



송형민 변호사 Hyungmin Song Senior Associate h.song@tamimi.com



박인혜 연구원 Inhye Park Paralegal i.park@tamimi.com



윤덕근 변호사 Dukgeun Yun Senior Associate dg.yun@tamimi.com

# **Table of Contents**

### 01

### **DISPUTE RESOLUTION**

A Few Good Clauses: Choose the right jurisdiction clause and avoid a code red!  ${\bf 05}$ 

Legally Bombed: A Guide to Recognising and Enforcing Foreign Judgments in the UAE  $\bf 06$ 

Arbitrability of trademark disputes in the UAE 07

Criminal penalties for dishonoured cheques after legislation is repealed in UAE  $\bf 08$ 

## 02

#### **RESTRUCTURING**

Restructuring and insolvency regimes 10

A tale of corporate insolvency options for distressed debtors 11 UAE Holding Structure: an umbrella for your African operations 12

## 03

### JURISDICTION UPDATE - UAE

Bank guarantees in the UAE 15

The new Consumer Protection Law in the UAE 16

### 04

### JURISDICTION UPDATE - KSA

KSA: Penalties waived if anti-concealment law violations are corrected by 23 August 2021 **18** 

Reforming the employment landscape in KSA: a look at significant upcoming labour reforms **19** 

Restructuring and redundancies in the KSA and

Saudi Arabia: ship arrest in practice 23

## 05

### JURISDICTION UPDATE - KUWAIT

Proper form: contract drafting essentials in Kuwait 25

## 06

### JURISDICTION UPDATE - EGYPT

Egypt new Custom Law 27

### 07

#### JURISDICTION UPDATE - IRAQ

Companies and their administration in Iraq 30

### 80

AL TAMIMI & COMPANY NEWS 32





# A Few Good Clauses: Choose the right jurisdiction clause and avoid a code red!

 관할 조항(Jurisdictional clause)이란 당사자들이 계약에 대한 소송 또는 기타 분쟁 해결 절차를 어디에서 하여야 하는지 정하는 규정인바, 잘못된 관할권을 선택할 경우 피할 수 있는 법적 비용이 당비되거나 판결 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고에서는 올바른 관할권 선택을 위한 주요 고려 사항들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 절차상의 고려사항 (procedural consideration)

- DIFC와 ADGM 등 경제자유구역에 설치된 보통법 법원과 중재의 경우 UAE로컬법원 소송에 비해 보다 비용이 훨씬 비싸 상당한 초기 투자가 필요하지만 승소당사자는 관련비용의 65~90% 정도를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보통법 법원은 결석재판(Default judgement), 약식판결(Summary judgement), 금지가처분(Prohibitive injunction), 동결 명령(Freezing order), 국제 동결(Worldwide freezing 이하 "WWFO")을 포함한 다양한 가구제 조치(Interim relief)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 UAE로컬법원에서도 은행과 정부 당국에 관련 청구의 가치 자산을 동결할 것을 요청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가압류(Precautionary attachment order)와 같은 동결 명령(Freezing order)과 동일한 가구제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 중재의 경우 분쟁 당사자가 전문지식을 갖춘 중재인을 선택할수 있고 절차상 기밀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준거법 조항의 집행 가능성 (enforceability of a governing law clause)

 중재 법원 및 보통법 법원과 달리, UAE로컬법원은 당사자들이 특정 법률을 준거법 조항에 지정한 경우에도 UAE법률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어, 선택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절차의 효율성 (efficiency of proceeding)

 UAE로컬법원에서 1심 판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약 6-12개월이며 항소시 추가적으로 6-9개월이 소요됩니다. 보통법 법원은 판정까지 9-18개월이 소요되며, 항소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해 비교적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중재의 경우 통상 1년에서 1.5년이 소요됩니다.

## 결과의 확실성과 예측 가능성 (certainty and predictability of outcome)

 UAE로컬법원의 경우 판례의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고 다양한 상업적 문제에 대한 법리가 아직 형성 중에 있어 상대적으로 판결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어려운 반면, 보통법 법원인 ADGM과 DIFC는 영국법을 기반으로 하고 판례의 구속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판결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 집행 (Enforcement)

- 관할권 조항은 상대방 자산의 소재와 판결의 승인가능성을 고려하여 선택되어야 합니다.
- 중재 결정은 UAE 및 뉴욕 협약(New York Convention)에 가입한 국가에서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 UAE로컬법원 및 보통법 법원의 판결은 프리존을 포함한 모든 7개의 토후국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UAE로컬법원 및 보통법 법원의 판결이 다른 나라에서 집행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는 해당 국가의 법률에 의해 결정되지만, UAE와 양국간 혹은 별도의 국제조약을 체결한 나라에서의 판결 집행은 가능합니다.
- 한편, 보통법 법원은 영미법을 채택하고 있어 해외 판결을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반면, UAE로컬법원은 해외 판결 집행을 제한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필요할 경우 DIFC법원을 "관할 도관(conduit jurisdiction)"으로 사용하여 DIFC의 해외 판결을 기반으로 한 판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결어

- UAE로컬법원이 상대적으로 집행이 용이하고, 다른 관할권에 비해 소송비용은 저렴하지만 비용을 회수할 수 없다는 점과 항소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항소 기간을 고려하면 UAE로컬법원, 보통법 법원 및 중재의 효율성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으며 세 관할권 모두 UAE 내외에서 높은 수준의 집행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관할권 조항에 대한 주요 결정 요인은 계약 당사자들의 선호하는 준거법, 기밀성 및 절차적 고려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April 2021

 $\frac{https://www.tamimi.com/law-update-articles/a-few-good-clauses-choose-the-right-jurisdiction-clause-and-avoid-a-code-red/}{code-red/}{}$ 

# Legally Bombed: A Guide to Recognising and Enforcing Foreign Judgments in the UAE

### 머리말

- 외국판결 및 중재판정의 집행은 해당 판결 내지 판정의 국적과 자산소재지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필요로 합니다. 집행은 대개 두 단계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집행국에서 집행할 수 있다고 선언 또는 확인하는 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그에 대해서 실제로 강제집행을 하는 절차입니다.
- UAE는 외국판결의 집행에 관하여 GCC협약, 리야드협약 등의 체결국이고,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보장하는 뉴욕협약의 체결국입니다. 또한 보통법법원인 DIFC 및 ADGM법원은 유수의 국제상사법원들과 외국판결의 상호 보증 및 인정에 관한 협약을 맺고 있기도 합니다.

#### 집행절차

- 두바이법원에서 외국판결을 집행하려면 먼저 1심 법원의 집행판사에게 집행허가를 구해야 합니다. 이 때 집행판사는 3일 내에 결정을 해야 하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가 가능합니다.
- 외국판결이 구비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UAE법원에 전속관할이 없고 당해 외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존재할 것
  - 2. 외국재판절차가 당해 외국법에 합치할 것
  - 3. 소송당사자가 송달을 받고 방어의 기회를 가졌을 것
  - 4. 외국판결에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5. 해당 판결이 UAE의 공서에 반하지 않을 것

- 상호보증도 요건인데, 이는 해당 외국법원에서도 UAE법원판결을 승인 및 집행하는 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상호보증 존부의 판단이 반드시 용이하지는 않으므로, GCC협약 또는 리야드협약 등에 의해 상호보증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대체로 DIFC법원에서 집행허가를 구하게 됩니다.
- DIFC법원에서 GCC 협약 내지 리야드협약의 적용대상인 외국판결의 집행은 Part 45 신청에 따르는데, 이는 일반적인 Part 7 절차에 비해 효율적입니다.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은 해당 재판이 사기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공서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사유로만 거부될 수 있습니다. 물론 Part 45 신청의 경우 당해 조약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DIFC법원은 외국판결의 내용을 재심사할 수 없습니다.
   사실인정 내지 법률해석의 오류도 이의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자산동결처분

 채무자가 그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만들수 있는 경우 재산 동결 중지명령을 구할 수 있고, DIFC법원은 목적물이 있는 곳이 DIFC가 아니더라도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관련 요건과 절차는 영국 법과 유사하며, 집행절차가 DIFC법원에서 진행중이더라도 두바이법원에 별도의 가압류신청이 가능합니다.

### 강제집행

- 외국판결의 집행이 허가되면 두바이에서의 강제집행은 UAE로컬법원의 판결에 기한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DIFC법원이 집행을 허가하면 강제집행은 DIFC법원의 판결에 기한 경우와 유사하고, DIFC 외에서의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에 의해 실질재심사는 금지됩니다.
- 이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April 2021

https://www.tamimi.com/law-update-articles/legally-bombed-a-guide-to-recognising-and-enforcing-foreign-judgments-in-the-uae/

# Arbitrability of trademark disputes in the U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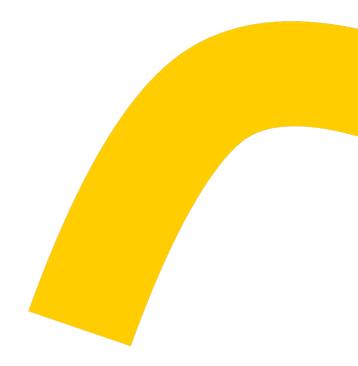
-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이하 "UAE")상표법(Trademark Law No. 37 of 1992)은 상표권 출원관련 당사자 간 분쟁 시, UAE특허청(Trademark Office) 및 법원(Civil Courts)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상표권 분쟁의 경우, 중재를 통해서도 분쟁해결이 가능하지만, 실제 UAE법령 상에 상표권 분쟁 시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에 대해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실제 중재가 분쟁해결수단으로 인정된 선례를 소개하며, 2가지 유형의 상표권 관련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표권 소유권 분쟁(Trademark ownership disputes): UAE에서 상표권 이전 시. 관련 당사자는 상표법 제37조에 따라 소유권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예: 양도확인증(deed of assignment) 또는 법원 판결문 등)를 특허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두바이 대법원은 중재판정으로도 상표권의 소유이전이 가능하다고 판결내린 바 있습니다. 2012년 원고는 두바이 법원에 형제를 상대로 본인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보유한 모든 자산 (상표권 포함)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으나, 두바이 법원은 해당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관 상 중재조항을 근거로 분쟁해결을 위해 중재인을 임명하였습니다. 이후, 중재인은 원고가 회사의 사업운영에 손실을 끼쳤다는 점을 근거로, 상표권을 포함하여 원고의 회사 자산에 대한 지분을 모두 형제에 이전하도록 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보유한 상표권이 불법으로 이전되었다고 상고하였으나 두바이 대법원은 중재판정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상표권 소유권 분쟁해결에 있어 중재가 적용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상표권 침해(Trademark infringement disputes): 상표권을 침해한 당사자는 UAE형법에 따라 최소 AED 5,000의 벌금 및/또는 1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UAE특허청에 미등록된 상표권(non-registered trademarks)의 경우에는 형사법원의 관할권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사자 간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1993년 두바이 대법원은 인도계 담배회사 (이하 "원고")가 UAE현지 에이전트 (이하 "피고")의 모조품 유통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중재를 분쟁해결수단으로 최종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본 소송의 경우, 1심에서는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고, 이후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피고는 최종적으로 원고와 체결한 계약 상 중재조항을 근거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분쟁당사자 간의 계약 상에 중재조항이 있을 경우에 상표권 침해는 중재로 해결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 하지만, UAE에서 상표권 침해행위 자체는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되고, 형사법원은 분쟁 유형에 따라 상이한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중재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 이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pril 2021** 

https://www.tamimi.com/law-update-articles/arbitrability-of-trademark-disputes-in-the-uae/

# Criminal penalties for dishonoured cheques after legislation is repealed in UAE

- 2020년 10월 26일 UAE내각은 상사거래법(Commercial Transaction Law) 개정안을 공포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수표 관련 내용을 대폭 수정하였으며, 특히 수표 관련 범죄를 규정한 형법 제401조, 제402조 및 제403조를 폐기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수표 부도시 모두 형사절차로 진행되어 지나치게 형사기관에 부담이 되었으나, 금번 개정에 의하면 수표를 부도낸 사람이 해당 수표금을 변제하면 형사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상사거래법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부 변제: 수표금의 일부라도 계좌에 잔고가 있는 경우, 은행은 수표소지인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제617조 제3항).
  - 집행증서: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이 필요하나, 수표소지인이 약식절차를 통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되었습니다.
  - 3. 수표 관련 제재 범위의 수정: 종전에는 회사 발행 수표의 서명인이 잔고 부족을 안 경우 민형사책임을 부담했으나, 금번 개정을 통해 서명인은 범죄사실을 알았거나 스스로 범죄행위에 가담한 경우가 아닌 이상 제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4. 새로운 제재의 도입: 개정법은 법 위반시 형사제재와 수표금에 대한 잔고 부족을 잘못 고지한 경우 및 은행이 수표금의 일부 지급을 거절한 경우 등에 대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November 2020

https://www.tamimi.com/law-update-articles/criminal-penalties-for-dishonoured-cheques-after-legislation-is-repealed-in-uae/



# Restructuring and insolvency regimes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중동 지역내에서는 파산 및 구조조정 관련한 법률안이 활발하게 마련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 각 중동지역의 파산 관련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오만

칙령 53/2019 (Royal Decree 53/2019)에 의해 발행된 오만 파산법은 2020년 7월 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은 사업 활동을 하는 모든 자연인 및 외국 회사 및 지사에도 적용되지만, 은행과 보험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2. 아랍에미리트 (UAE)

UAE내각은 기존의 파산법(Federal Law No 9 of 2016 (Corporate Bankruptcy Law)을 Federal Law No 23 of 2019 및 Federal Law No. 21 of 2020 (이하 "개정법")의 두차례에 걸쳐 개정한 바 있습니다.

개정 법에는 긴급 금융위기시 발생하는 기업의 파산을 규정하는 "긴급 금융 위기 중 파산 절차"가 추가되었고, "긴급 금융위기"는 "팬데믹, 자연 또는 환경 재해, 전쟁 등과 같이 국가의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으로 정의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UAE 내각이 그 시기와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방파산법 이외에도 UAE의 금융프리존(Financial Freezone)인 DIFC 및 ADGM에는 해당 관할내의 기업에 적용되는 독립적인 파산법이 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 3. 사우디아라비아 (KSA)

1439 년 5월 28일자 칙령 M/50(Royal Decree No. M/50 of 28/5/1439H)에 의해 발행된 KSA파산법은 201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보호 정산, 금융 구조조정, 청산, 소액 채무자의 절차 및 행정 청산과 같은 구조조정 및 청산 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 4. 바레인

바레인내 설립된 회사의 파산시에는 바레인 파산법(Law No. 22 of 2018), 바레인 중앙은행(Central Bank of Bahrain) 및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률(Law No. 64 of 2006)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바레인 파산법은 중앙은행 면허가 없는 모든 회사에 적용됩니다. 개인의 파산 절차를 규율하는 바레인 법률은 없습니다.

#### 5. 카타르

카타르 역시 본토와 금융프리존인 QFC의 파산 관련 제도를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토의 경우, Commercial Law No 27 of 2006 에 명시된 파산 제도하에서, 실제 회사의 해산 및 청산은 Commercial Companies Law No. 11 of 2015상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Qatar Central Bank Law No. 12 of 2013 에 따라 카타르 중앙은행은 금융기관(보험회사 포함)이 파산할 경우 혹은 요청에 따라 임시 집행도 가능합니다.

QFC는 영국법을 기반으로 하는 QFC Insolvency Regulations 2005을 통해 별도의 파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6. 이집트

이집트에서는 Egyptian Bankruptcy Law No. 11 of 2018을 통해 기업의 구조조정 및 파산을 규제하고 있고, 특히 법원 감독하의 조정시스템 뿐만 아니라, 법정 밖에서 가능한 구조조정 절차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 7. 쿠웨이트 (Kuwait)

쿠웨이트에서는 최근 신규 파산법(Law No. 71 of 2020)이 의회의 승인을 거쳐 2020년 10월에 공표된 바 있습니다.

•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February 2021

https://www.tamimi.com/law-update-articles/restructuring-and-insolvency-regimes/

# A tale of corporate insolvency options for distressed debtors

본 기사는 부실 채무자가 관리 감독(administration), 자발적 청산 또는 채권자와의 화의(composition with creditor)을 통해 특정 보호를 추구할 수 있는 기업파산제도에 지원을 요청한 사례와 채권자가 지불불능 채무자를 구제 또는 청산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현지 법률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 NMC 헬스케어 그룹 - ADGM 관제(administration)

UAE 내 가장 큰 민간 의료 서비스 기업 중 하나였던 NMC 그룹은 사기 거래에 연루되면서 2020년 초 지급불능이 되었습니다. 그룹의 모기업 (NMC Healthcare Plc)은 2020년 4월 초 영국에서의 관제인 임명과 함께 법원의 관리를 받게 되었으며 UAE 자회사는 영국 파산제도와 동일한 ADGM 파산 규정에 따르기 위해 ADGM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한 후 ADGM 법원에 행정명령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ADGM 법원은 채권자가 UAE 자회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청산을 청원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이러한 법적 지불유예 (statutory moratorium)의 보호 하에 회사는 재무재구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ADGM 법원은 ADGM 파산 규정에 따라 우선 자금조달계약을 승인하였습니다.

### **UAE** Exchange

2020년 3월 초, UAE 중앙은행 (UAE Central Bank)은 모기업(Finablr)에서 수행된 내부조사 결과에 따른 UAE Exchange의 파산 위험 상태를 고려하여 UAE Exchange의 모든 운영을 관리 감독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내부 조사가 끝날 때까지 UAE Exchange의 송금 서비스를 중단시켰습니다.

Federal Law No. 14 of 2018 (Banking Law)에 의거, UAE 중앙은행은 파산 위험이 있는 금융기관에 관리 감독, 기관의 합병 또는 재구성, 청산 및 라이선스 변경 등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 재무 구조 조정위원회(Financial restructuring committee; 이하 'FRC')

2020년, FRC는 특정 UAE 기업들의 재무구조조정 감독 신청을 수락하며, 채권자들에게 FRC와의 협력과 기업에 대한 청구를 FRC에 제출할 것을 촉구하고 채권자 투표와 조직개편 계획에 관하여 세부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FRC를 통한 재무구조조정은 부실기업을 위한 비 법률적 옵션으로, 로컬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기 전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FRC가 재무구조조정 감독 신청을 수락하면 FRC는 파산 관재인과 유사한 전문가를 임명하여 신청자의 재무 상태를 평가하고 채권자와 합의를 시도합니다. 관재인은 회사를 청산할 권한이 없으며 FRC의 후원을 받는 금융 구조조정은 채무자 또는 그 자산에 대한 어떠한 사법 절차도 유예시킬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프리존에서의 파산 옵션 (Non-Financial Free zone insolvency)

UAE 파산법 외에도 일부 프리존에는 해당 기업이 자발적으로 청산하거나 채권자가 당국의 승인을 받은 청산인을 임명하여 청산할 수 있는 특정 파산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일부 프리존(예: DMCC)은 UAE 파산법에 따른 청산 옵션을 명시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RAK프리존에 설립된 회사의 채권자 중 한 명이 자산 매각 대금의 이익을 얻기 위해 회사의 파산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개 통보 후, 법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은 파산절차에 참여했지만 법원이 지정한 수탁자가 회사자산 추적이 불가능하고, 회사 직원 누구에게도 연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산 진행이 불가능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 채권자 인수 (Creditor Take Over)

최근에는 채권자 (특히 대주단)들이 경우에 따라 (특히 주요 주주가 이탈한 경우) 경영권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며, 채무자 관리 및 통제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채권단은 해당 회사 경영의 근본적인 위험성 뿐 아니라, 경영안정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법원에 입증해야 합니다.

• 이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February 2021

https://www.tamimi.com/law-update-articles/a-tale-of-corporate-insolvency-options-for-distressed-debtors/

# UAE Holding Structure: an umbrella for your African operations

아랍에미리트 (이하 "UAE")는 7개의 토후국 연합으로 구성된 국가로,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란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와 아시아 대륙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지정학적으로 중동아프리카 사업을 하기 위한 최적의 위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UAE는 아프리카 27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체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한 제도 및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으며, 법률적으로도 지주회사(holding entity) 등의 다양한 사업구조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주회사는 민간 또는 상장기업의 지분, 부동산, 지식재산권, 고정자산 등에 투자•소유 목적으로 설립되는 회사로, UAE 역 내•외 모두 설립이 가능합니다. 역 내(mainland) 설립 시에는 개별 토후국 내 라이센스 발급기관인

경제개발부(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 이하 "DED")의 승인이 필요하며, UAE 회사법(Federal Law No. 2 of 2015)에 따라 UAE국적자가 해당 회사의 지분 최소 51%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UAE정부는 많은 사업 분야에 걸쳐 이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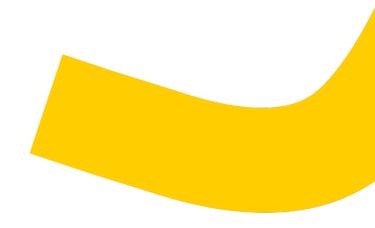
요건을 완화하며 실제 사업유형에 따라 역 내 회사에 대해 외국인의 100% 지분보유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실제라이센스 허가의 경우에는 개별 토후국 DED 별로 요건이 상이하기때문에, 실제 역 내에 지주회사 설립을 희망하는 당사자는 관련 요건을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외의 프리존 Freezone)에 설립하는 회사의 경우, 외국인이 100% 지분보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리존은 특정 산업군 개발, 외국인투자 유치, 고용장려, 무역활성화, 경제다각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조성되는 지역으로, UAE는 30곳 이상의 프리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리존 중에서도 지주회사 설립시 가장 많이고려되는 곳으로는 아부다비 글로벌마켓(Abu Dhabi Global Market; 이하 "ADGM"),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이하 "DIFC"), 제벨알리프리존(Jebel Ali Free Zone; 이하 "JAFZA"), 라스알카이마 국제기업센터(RAK International Corporate Centre; 이하 "RAK ICC")가 있으며, 개별 설립요건은 다음과 같이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상세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도확인이 가능합니다.

설립유형	설립 시 고려사항	설립요건
ADGM - SPV	<ul> <li>지주회사</li> <li>SPV명의로 직원 고용 불가</li> <li>ADGM 내 등록된 주소 필요</li> <li>ADGM 당국(ADGM Registration Authority)은 SPV가 UAE 또는 GCC국가 관련 요건 (*아래 중택1)을 반드시 충족하도록함.</li> <li>SPV 관리•소유주가 UAE 또는 GCC국적자 (개인/기업)</li> <li>SPV가 UAE 또는 GCC국가에 소재한 자산 보유</li> <li>SPV가 UAE경제에 실질적인 기여가능한 거래 추진</li> <li>ADGM 내 상장 또는 트레이딩이 가능한 유가증권 발행을 위해 SPV설립</li> </ul>	필요서류: 신청서, SPV설립 신청법인의 설립문서, 등기부등본(registry extracts), SPV지분 소유자 정보 (별도 공증 필요X)     소요기간: SPV설립 신청서 제출 기준으로 10 영업일 소요     비용: 약 USD 1,600 (*라이센스 갱신비용: USD 200)
ADGM - LTD	<ul> <li>LTD: 일반 주식회사지만, 사업활동이 "지주회사"인경우</li> <li>SPV와는 달리 실제 운영가능한 회사이므로, 다양한사업활동 영위 가능</li> <li>LTD명의로 직원 고용 가능 (*실제 사무실 규모에 따라고용가능한 인원이 정해짐)</li> <li>ADGM 내 실제 사무실 및 주소 필요</li> <li>SPV와는 달리 별도로 ADGM 당국에서 요구하는주주 및 자산보유 요건 없음</li> </ul>	<ul> <li>필요서류: 신청서, LTD설립 신청법인의 설립문서, 등기부등본(registry extracts) (별도 공증 필요 X)</li> <li>소요기간: LTD설립 신청서 제출 기준으로 10 영업일 소요</li> <li>비용: 약 USD 10,300 (*라이센스 갱신비용: USD 8,100)</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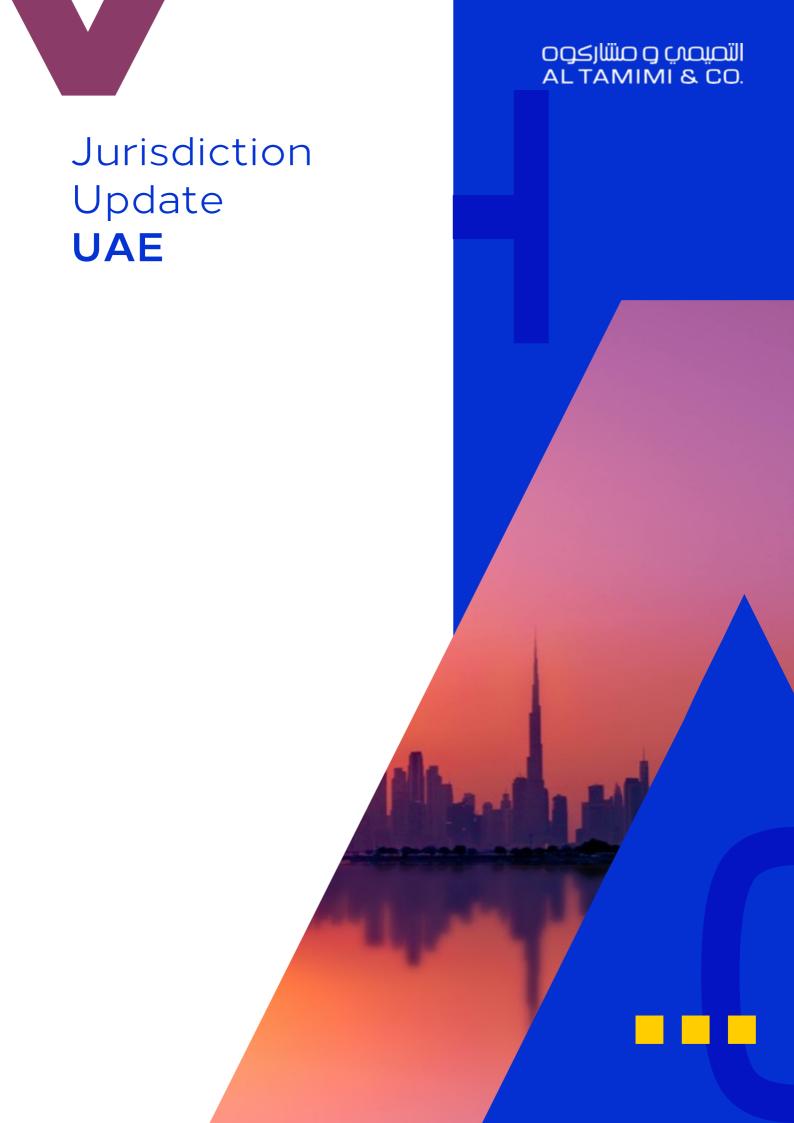
설립유형	설립 시 고려사항	설립요건
DIFC	<ul> <li>DIFCCo: DIFC 내 설립가능한 지주회사</li> <li>DIFCCo 명의로 직원 고용 가능</li> <li>DIFC내 실제 사무실 및 주소 필요</li> <li>DIFCCo가 UAE 외에 소재한 지분 및 자산 보유 가능</li> </ul>	<ul> <li>필요서류: 신청서, DIFCCo설립 신청법인의 설립문서, 등기부등본(registry extracts), DIFCCo지분 소유자 정보 (반드시 공증 필요 O)</li> <li>소요기간: DIFCCo설립 신청서 제출 기준으로 6 – 8주 소요</li> <li>비용: 약 USD 22,500 (*라이센스 갱신비용: USD 12,500)</li> </ul>
JAFZA	- JAFZA Offshore Company(이하 "OffshoreCo"): 지주회사로 운영이 가능한 유한책임회사 - OffshoreCo 명의로 직원 고용 불가하고, UAE당국에 등록된 에이전트를 반드시 선임해야 함 - OffshoreCo는 상업활동 (commercial activities) 할 수 없으나 UAE 내•외 자산•지분 보유가능	- 필요서류: 신청서, OffshoreCo설립 신청법인의 설립문서, 등기부등본(registry extracts), OffshoreCo지분소유자 정보 (반드시 공증 필요 O) - 소요기간: OffshoreCo설립 신청서 제출 기준으로 10 영업일 소요 - 비용: 약 USD 2,750 (*라이센스 갱신비용: USD 850)
RAK ICC	- 지주회사로서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 설립 가능 - SPC명의로 직원 고용 불가하고, UAE당국에 등록된 에이전트를 반드시 선임해야 함	- 필요서류: 신청서, SPC설립 신청법인의 설립문서, 등기부등본(registry extracts), SPC지분 소유자 정보 (반드시 공증 필요 O) - 소요기간: SPC설립 신청서 제출 기준으로 약 1주일 소요 - 비용: 약 USD 850 (*라이센스 갱신비용: USD 850)

• 이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March 2021

https://www.tamimi.com/law-update-articles/uae-holding-structure-an-umbrella-for-your-african-operations/



# Bank guarantees in the UAE

-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시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해석이 상반되고 유효한 보증의 형태에 관한 이견이 지속되는 가운데, 본고에서는 채무자의 은행채무에 대한 제3자 보증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 UAE 민사거래법 (이하 "민법") 공포에 관한 1985년도 연방법
  제5호 제1092조(Article 1092 of the Federal Law No.5 of
  1985)에 의거해,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은 지급기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진행해야합니다.
- 하지만 제 1092조의 적용에 대해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이하 "UAE") 법원은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로, 아부다비 대법원은 제 1092조가 민간 거래(civil transactions)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금융 거래 및 은행지급보증에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후자의 경우, 대법원은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두바이 대법원은 제 1092조가 모든 형태의 보증에 적용되며, 이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를 6개월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실무에서는 통상 UAE내의 보증계약이나, UAE업체를 당사자로 하는 보증계약의 경우, 이러한 1092조의 적용에 대한 면제 조항을 삽입하여, 제1092조의 해석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UAE 대법원에서는 최근 판결을 통해 은행 자금조달시 체결하는 보증계약과 관련하여 민법 제 1092조가 상업보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민법상의 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6개월은 금융거래 (대출약정 등)시의 보증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UAE대법원은 보증계약에는 실제 채무액수 등과 같은 상세한 사안이 굳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되며, 보증이 어떤 특정한 계약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아도 무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이는 UAE대법원이 종전에 고수해왔던 입장과 상이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며, 특히 두바이 법원이 향후 제 1092조의 적용 및 해석과 관련하여 본 판결의 논리를 따를지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 본 판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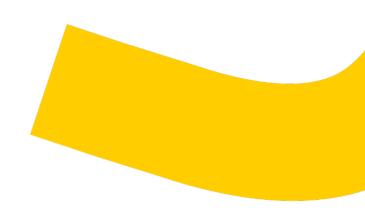
March 2021

https://www.tamimi.com/law-update-articles/bank-guarantees-in-the-uae/

## The new Consumer Protection Law in the UAE

- UAE에서는 지난 2020년 11월 10일에 소비자 보호에 관한 2020년도 연방법 제15호 (이하 "소비자 보호법")가 공표됨에 따라 종전의 2006년도 법안 대비 소비자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본고에서는 신규 법령의 도입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인 판매자의 마케팅 및 프로모션 활동에 사용되는 소비자의 개인 정보 보호와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대하여 다루겠습니다.
- 소비자 보호법 제3조에 의거해 "동 법령은 아랍에미리트(UAE)가 가입국인 국제협약 및 협정을 침해하지 않고, 프리존을 포함한 UAE 내 제품 및 서비스를 비롯하여 판매자, 광고주 혹은 에이전트가 이와 관련하여 행하는 영업활동 (UAE 내 등록 판매자인 경우 전자 상거래도 포함)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 신규 법령은 최초로 프리존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전자상거래에 관해 명시하고 있어, 기존에 프리존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한층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 소비자 개인정보는 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 데이터베이스와 마케팅 전략 강화에 용이하기에 소비자의 민감한 정보를 제3자에 판매하는 등 개인정보 악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곤 했습니다. 신규 법령은 최초로, 판매자에 대해 소비자 개인정보의 기밀성을 보장해야할 법적 의무를 부여합니다. 소비자 보호법 제4조는 소비자 정보와 데이터를 보호하는 동시에, 소비자 정보를 거래 및 마케팅 목적으로 배포하거나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법은 제품의 공급 및 수령시 소비자의 종교적 신념과 전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 보호법 제25조에 의거해 판매자는 관할당국에 판매자 소유제품에 관한 거래 정보가 명기된 장부 및 원장을 비롯하여 물품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할당국 요청시 기타 서류 및 인보이스를 제출해야합니다. 이로써 소비자의 입장에서 향후 손해배상 청구 관련 클레임 제기시, 증거 불충분으로 민사소송에 어려움이 따랐던 종전과 달리, 신규 법령이 도입됨에 따라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어 소송이 용이하게 됨은 물론,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판매자는 판매 제품 및 서비스의 가격을 광고할 의무가 있는데, 이 경우 허위 광고는 금지됩니다. 아울러, 판매자는 인보이스 발급시, 판매자의 상호명, 주소, 품목,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및 수량 등 상세내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인보이스는 아랍어로 발급해야하나, 판매자 재량으로 기타 언어로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보호법은 과태료 . 징역형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처벌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제29조에 의거해 판매자는 허위 광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AED 10,000에서 최대 AED 2,000,000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결함이 있는 제품 혹은 서비스를 시정하거나 대체하지 않는 판매자 역시 동일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 한층 강화된 소비자 보호법은 소비자 권익 침해를 보다 엄격하게 처벌하며, 동 법령의 적용 범위가 프리존까지 확대됨으로써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March 2021

https://www.tamimi.com/law-update-articles/the-new-consumer-protection-law-in-the-uae/

Jurisdiction
Update
Saudi Arabia



OOSJUIO O صنباركور AL TAMIMI & CO.

# Penalties waived if anti-concealment law violations are corrected by 23 August 2021

-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 내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올해 8월 23일까지 Anti-Concealment Law에 명시된 위반행위 시정 시 해당 내•외국인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공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Concealment란 사우디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가 사우디에서 다른 자의 라이센스나 영업허가를 이용하여 영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우디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는 이러한 Concealment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프로그램 (National Anti-Commercial Concealment Program; 이하 "Tasattur")을 시행하고 있는바, 금번 행정명령은 Anti-Concealment Law를 위반하고 있는 내•외국인이 올해 8월 23일까지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경우 Anti-Concealment Law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현재 Anti-Concealment Law 및 동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Anti-Concealment Law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이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에 해외투자신고를 하지 않고, 외국인의 투자가 금지된 부문에 투자하는 경우:
  - 외국인이 외국인투자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사우디아라비아에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운영(commercial operations)을 하는 경우:
  - Fronting Arrangement 외국인이 외국인투자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사업파트너 (주주)를 활용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그 이익을 향유하는 경우.
- 사우디아라비아 상공부는 금번 행정명령을 통해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면제를 위해 내•외국인이 취할 수 있는
   6가지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 사우디아라비아에 설립된 회사 지분을 보유한 외국인이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에 사업파트너로 등록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 충족 후, 해당 외국인을 사업파트너로 추가 등록;
  - 외국인의 회사 인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요건 충족 후, 외국인과 사우디아라비아인 간의 사업양수도계약을 통해 외국인 명의로 사업 소유권 이전;

- 사우디아라비아인이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사업파트너 (\*사우디아라비아인 또는 외국인투자면허를 취득한 외국인)를 상공부에 등록한 후, 기존과 동일한 사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
- 사우디아라비아인이 매각, 양도 또는 청산을 통해 해당
   사업을 처분:
- 외국인의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리미엄 거주허가증(iqama) 취득:
- 외국인이 기존 사업 운영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서약서(undertaking) 제출 후, 출국 사증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영구 출국.
- 관련 당사자는 위반행위 시정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상공부에 자진신고서(disclosure form)와 필요 서류 및 추가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들은 위에서 언급한 6가지 조치 중 당사자가 선택한 시정 조치에 따라 상이합니다.
-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은 관련 당사자의 위반행위 시정을 위한 요구사항 충족여부를 검토하고, 해당 당사자에게는 실제 위반행위 시정을 위해 90일 (\*사우디아라비아 당국 통보일 기준)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만약, 90일 이후에도 위반행위 시정이 되지 않은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은 관련 당사자에 시정조치 완료를 위해 추가로 180일의 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Anti-Concealment Law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상공부에 상기 6가지 조치 중 택1하여 자진신고를
   한 당사자는 동 법에서 규정하는 처벌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 또는
   법인세 소급적용과 관련한 처벌로부터 면제됩니다.
- 단, 실제 위반행위 시정을 위한 자진신고 제출 이전에 이미 체포된 적이 있거나 사우디아라비아 수사당국(Saudi Bureau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또는 법원에 회부된 적이 있는 당사자는 처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올해 8월 23일부로, Anti-Concealment Law를 준수하지 않는 내•외국인은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 법을 위반한 당사자는 종교세의 일환인 자선용 세금(Zakat) 및 과징금 납부 뿐만 아니라 최대 5년의 징역형 및/또는 최대 5백만 사우디 리얄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처벌과 더불어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국으로 강제송환 될 수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을 보유한 개인은 최대 5년간 자국 내에서 사업운영이 금지됩니다.

### May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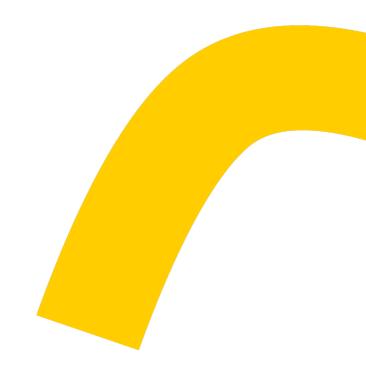
https://www.tamimi.com/news/ksa-penalties-waived-if-anti-concealment-law-violations-are-corrected-by-23-august-2021/

# Reforming the employment landscape in KSA: a look at significant upcoming labour reforms

- 지난 2020년 11월 4일 사우디아라비아 인력사회개발부(MHRSD)는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고용주의 승인 하에만 이직과 해외 출입국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Kafala제도를 일부 폐지하는 내용의 노동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동 개혁안은 2020년 11월 5일 공표된 Ministerial Resolution 제51848를 통해 입법화 되었고, 민간부문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021년 3월 14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인력사회개발부는 지난 2005년 9월 27일 발효된 Royal Decree Number M/51 (노동법)의 개정안을 발표하여 노동시장의 개선과 외국 고급 인력 유치를 통한 경제체질 개선을 도모하고 있는 바,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정 방향인 사우디 비전 2030의 일환입니다.
- 노동개혁안으로 인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유연성과 고용주 선택에 관한 자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외국인 근로자의 (1) 이직, (2) 출입국 비자(Exit and re-entry visa) 신청, (3) 최종출국 비자(Final exit visa)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 이직: 외국인 근로자는 하기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고용주의 승인 없이 이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1.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근로활동을 하며, 현지 노동법 적용대상인 외국인(expatriate)에 해당될 것;
  - 2. 현 고용주의 사업장에서의 근로 기간이 근로자의 사우디 아라비아 입국일로부터 one calendar year를 경과했을 것;
  - 3. 유효하고 공증된 근로계약서를 구비하고 있을 것;
  - 4. 인적사회개발부의 온라인 플랫폼인 Qiwa를 통해 새 고용주로부터 이직 제의를 받았을 것;
  - 5. 양자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 최소 90일 전에 현고용주에게 이직 요청을 통지할 것.
- 다음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 요청 시, 새 고용주가 충족해야 할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자국민 의무고용정책(Saudisation) 요건 및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위한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할 것;
  - 2. 임금의 적시 지급 및 급여 내역의 정기적인 관리를 의무화하는 임금 보호제(Wage Protection System) 규정을 준수할 것:

- 3. 근로계약서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전자 계약서 등록 프로그램(Contract Registration Program) 규정을 준수할 것:
- 4. 고용주의 인력사회개발부 규정 컴플라이언스 이행여부를 자가진단토록 하는 자기평가 프로그램(Self-Evaluation Program) 규정을 준수할 것.
- 한편, 동 개혁안은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을 가능케하는 예외규정도 함께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의 사우디아라비아 입국일로부터 3개월 내에 등록된 고용계약서가 없을 경우:
  - 2. 근로자가 3개월 연속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3. 고용주가 여행, 구금, 사망 등의 기타 사유로 부재한 경우:
  - 4. 근로자의 취업허가 또는 거주허가가 만료되었으며 갱신되지 않은 경우:
  - 5. 근로자가 고용주의 거래 은폐 정황을 신고한 경우 (단, 근로자가 은폐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 6. 고용주 근로자간 고용 분쟁 발생 후 고용주 또는 대리인이 심리 기일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기일에 두 차례 불참하였거나 노동부(Labour Office) 합의 기일에 두 차례 불참한 경우:
  - 7.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 요청을 승인한 경우.
- 출입국 비자(Exit and re-entry visa) 신청: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들은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주의 승인 없이 온라인 플랫폼인 Absher를 통해 출입국 비자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1. 사우디에서 근로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해당될 것;
  - 2. 유효한 거주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을 것;
  - 3. 공증된 근로계약서를 구비하고 있을 것:
  - 4. 입출국 비자 발급 비용을 지불할 것;
  - 5. 미납된 공과금 및 과태료가 없을 것;
  - 6. 고용주로부터 승인 받은 휴가기간 종료 전까지 사우디로 돌아오지 않을 경우 취해질 수 있는 조치에 대하여 숙지하였음을 온라인 플랫폼 Absher를 통해 선언할 것.

- 최종출국 비자(Final exit visa) 신청: 또한, 최종출국비자 역시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주의 승인 없이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1. 사우디에서 근로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해당될 것;
  - 2. 유효한 거주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을 것;
  - 3. 공증된 근로계약서를 구비하고 있을 것;
  - 4. 미납된 공과금 및 과태료가 없을 것;
  - 5. 고용계약 이행 전 혹은 Absher를 통한 최종출국 신청 전에 출국할 경우 취해질 수 있는 조치에 대하여 숙지하였음을 Absher를 통해 선언할 것.
- 상기 개혁안과 더불어, 인력사회개발부는 지난 2021년 1월 노동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의 도입 시기는 현재 미정이며, 고용주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 및 송환 비용 부담 의무, 수습 기간, 주간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기간 확대, 고용 종료 관련 법조항 및 부당해고 보상금 확대 등의 사안을 규정할 예정입니다.
- 이 같은 변화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내국인 및 외국인 인력 유치에 있어 민간부문 고용경쟁력을 확대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우디아라비아 시장 진출을 계획 중이거나 기 진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고용주의 경우 위 노동개혁안에 따른 변화에 발맞추어, 신규고용 계약서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등 필요한 대비를 취할 것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 이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February 2021

 $\underline{https://www.tamimi.com/law-update-articles/reforming-the-employment-landscape-in-ksa-a-look-at-significant-upcoming-labour-reforms/}$ 



# Restructuring and redundancies in the KSA and Bahrain

 코로나 19가 여전히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본고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에서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주의하여야 할 법률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우디 아라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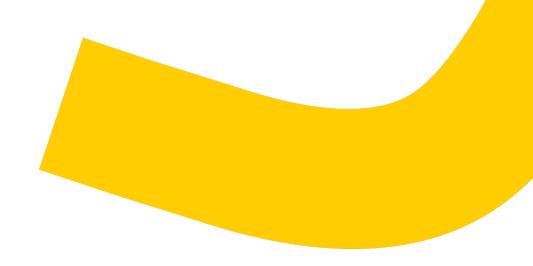
- 사우디 노동법: 사우디 노동법은 다음과 같은 상황하에서 정리해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1. 고용인이 폐업을 하는 경우 (74조 6항)
- 피고용인이 수행하던 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고용인이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경우 (74조 7항)
- 또한, 고용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한 계약에 있어서, 고용인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은 정당한 사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나, 노동법원은 최근 구조조정이나 기타 인력 감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해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정리해고 절차: 사우디 노동법은 정리해고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인은 정리해고 대상인 근로자들과 가능하면 대면 접촉을 통해 미리 정리해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아랍어 혹은 근로자가 아랍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된 정리해고 통지서를 통해 정리해고를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계약에서 특별히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60일 이전에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30일 이전에 해고 통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정부당국에 대한 통지: 원칙적으로,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노동부에 통지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Ministerial Resolution No. 50945에 따라 아래의 요건들이 충족될 경우에는 정리해고 60일 이전에 지방 노동사무소에(labor office)에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 1. 고용인이 50인 이상의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 2. 근로자들이 아닌 고용인에게 책임 있는 원인으로 인하여 사우디 국적의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경우: 및
- 3. 총 근로자들의 1% 이상 혹은 지난 12개월간 10명 이상의 사우디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경우
- 지방 노동사무소에 정리해고 사전 통지를 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1. 정리해고를 뒷받침하는 재무 분석 자료
- 2. 정리해고의 대상인 사우디 근로자 명단
- 3.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취해진 구체적 조치들
- 지방 노동사무소는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심사할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사전 통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답변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정리해고 사전 통지를 기각하며, 정당성이 인정되면 이를 승인할 것입니다.
- COVID-19: 근로자가 SANID 프로그램에 따른 임금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바레인

- 바레인 노동법: 바레인 노동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정리해고가 가능합니다.
- 1. 전부 혹은 일부 폐업
- 2. 회사 영업의 축소
- 3. 근로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 시스템의 변경
- 정리해고 절차: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고용인은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근로자들과 협의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인은 정리해고의 대상인 근로자들과 사전 면담을 통해 정리해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해고 통지서에도 정리해고의 사유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인은 바레인 근로자가 아닌 외국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정리해고의 대상으로 선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정부당국에 대한 통지: 고용인은 정리해고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을 선정한 후에는 정리해고 통지일보다 최소 30일 이전에 바레인 노동부에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노동법 제110조). 위 사전통지에는 정리해고 대상자의 이름, 국적, 직위 및 근로 기간의 명시해야 합니다.
- 위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정리해고가 부적법한 해고가 될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하며, 500-1,000 BHD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 COVID-19: 바레인 정부는 2020년 고용인이 바레인 정부로부터 근로자들의 급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바레인 국적자의 정리해고를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현재는 이러한 정책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다만, COVID-19의 추이에 따라 향후 바레인 정부가 바레인 국적자의 고용 보호를 위하여 추가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도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February 2021

https://www.tamimi.com/law-update-articles/restructuring-and-redundancies-in-the-ksa-and-bahrain/

## Saudi Arabia: ship arrest in practice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지난 2007년에 사법제도 패키지 지원책을 추진하고 법제도 재정비에 착수했으며, 2019년도에는 이같은 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해상법(Cabinet Resolution No. 197 of 1440H Royal Decree (M/33) of 1440H)을 제정하였습니다. 해상법은 해상 채무와(maritime debt) 선박 억류(ship arrest)를 비롯하여 해상 산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제하며, 해상법의 제정에 따라 청구인의 선박 억류를 통한 해상 채무 확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기업활동 및 기업 신뢰도가 보다 증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해상 채무(Maritime Debt)의 정의: 해상법 제 75조는 다음 중하나의 요인으로 발생한 채무를 "해상 채무"로 정의하고 있으며, 아래 명시되지 않은 기타 요인으로 발생한 채무에 관해서는 선박 억류 영장의 발부가 불가합니다.
- 1. 선박 충돌, 해양오염 등 유사 해양 사고로 인한 피해
- 2. 선박 또는 선박의 운용으로 인한 인명손실 또는 상해
- 3. 선박의 이용 및 용선과 관련된 계약
- 4. 용선 계약 및 선하증권에 따른 화물 운송과 관련된 계약
- 5. 선박 운송 중 발생한 화물 파손 및 분실
- 6. 구조료
- 7. 공동해손
- 8. 예선료
- 9. 도선료
- 10. 선박 운항 또는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자재의 공급
- 11. 선박의 건조. 수리. 설비 관련 및 접안에 따른 비용
- 12. 선장, 기관사, 선원 및 선적 사무원에 대한 임금
- 13. 선장, 송하인, 용선자 및 선적 사무원이 선박 또는 선주를 대행하여 지출한 비용
- 14. 선박 소유권 관련 분쟁
- 15. 공동소유선박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분쟁 또는 선박의 운용 및 그에 따른 공동선주들의 권리와 관련된 분쟁
- 16. 선박저당권

- 17. 항구 및 수로 이용료 및 항만세
- 18. 선박 보험
- 19. 잔해물 또는 화물 인양 및 제거비용
- 청구인은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것과 더불어, 법원이 해당 선박의 억류를 명할 근거를 제공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증빙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우디 상법 제2조에 의해 상사법원(commercial court)은 해상노동계약을 제외한 모든 해상활동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선박 억류 (Ship arrest)에 대한 법적 절차: 억류 영장은 해당 선박 또는 등록 선주가 동일한 자매선에 대해서도 발부 가능합니다. 청구인은 법원의 온라인 포털을 통해 억류 신청서(arrest application)를 접수해야하며, 신청일로부터 3일 내에 영장 발부 허가 여부를 통지 받게 됩니다. 단, 이 때, 법원은 해당 결정을 내린 사유를 고지할 의무가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이 승인된 경우, 청구인은 억류 대상인 선박이 항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영장을 항만공사로 전달하여, 선박과 선주에 송달하게 됩니다. 영장 신청이 거절된 경우에는 항소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소법원을 통해 최종 판결을 받게 됩니다.
- 법원은 선박 억류 신청을 승인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자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선박 억류를 명할 경우, 해당 선박은 항만공사에 의해 억류당하며, 법원에서 억류 해제를 명하지 않는한, 사우디 영해를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선박에 대한 억류 해제는 (1) 선박 억류 당사자가 은행 보증장 또는 현금으로 채권 금액에 해당하는 담보(security)를 제공하고 임시구제 신청을 하거나, (2) 관할법원에 청원서 제출을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선박의 억류상태가 지속되어 해당 기간 동안 항구세와 선박운항비가 누적되기에 추천하지 않는 바입니다.
- 법원에서는 별도의 사유 고지 없이 억류 신청 승인 여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자의권을 가지고 있기에, 청구인은 선박 억류 신청 시 충분한 증거서류 (원본)를 준비하여 함께 제출하고, 해당 선박이 사우디 영해에 진입하기 전 위임장 집행 및 공증을 마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April 2021**

https://www.tamimi.com/law-update-articles/saudi-arabia-ship-arrest-in-practice/





OOSJUIO O صنباركور AL TAMIMI & CO.

# Proper form: contract drafting essentials in Kuwait

- 쿠웨이트에서는 현행법상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예: Kuwait Law No. 68 of 1980(쿠웨이트 민법)) 사법역량이 제한되어 있어, 계약내용의 집행에 관한 불확실성이 수반됩니다. 이에 계약의 집행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계약서의 올바른 작성이 중요한 바, 본고에서는 계약 해석의 원칙과 계약서 작성시 쟁점이 되는 사안을 살펴봅니다.
- 먼저, 쿠웨이트 민법상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이상당사자간 의사표시에 의해 합치된 계약 조항은 집행가능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둘째, 계약 문언(wording)이 명확한 경우, 계약은 해당 문언대로 해석됩니다. 즉,법원 및 중재판정부는 당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으로 계약을 해석할 수 없으며, 이는 보통법계 국가에서 적용되는 구두증거배제의 법칙(parol evidence rule)과 유사합니다. 반면, 계약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는 해당 조항 작성시 당사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당사자들의 총체적 관계(totality of the relationship)를 고찰하여 해석을 하며,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suffering party)에게 유리하게 해석됩니다. 따라서, 계약 조항을 작성함에 있어, 분쟁 발생시 적용되는 준거법에 따른 계약 해석 방법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셋째, 쿠웨이트법상 적용되는 계약 해석의 기본 원칙 외에, 관행과 형평성 원칙과 같이 계약서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원칙이 있음에 유의해야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들은 신의성실(good faith)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계약 및 계약 체결 후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 있는데,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계약의 이행이 부당하게 부담되거나 (unduly burdensome) 불가능(impossible)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 한편,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계약 혹은 고액 계약 관련 분쟁 발생시, 중재와 같은 대안적 분쟁해결 방법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에서는 계약 당사자간 합의로 두바이 국제금융센터-런던 국제중재법원(DIFC-LCIA), 국제상업회의소(ICC)와 같이 쿠웨이트에서 공인된 국제중재판정부에 분쟁을 회부하기로한 경우 이를 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자간 합의하에 뉴욕 협약 가입국과 같은 외국 관할권으로의 중재회부도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외국중재판정의 상호보증(reciprocity)요건이 선행되어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중재판정부에 회부하도록 규정하는 조항 등 당해 계약서에 명기되어있는 대안적 분쟁해결 조항의 효력 유무 또한 쿠웨이트 법인체와 계약 체결시 주시해야할 주요 쟁점 중 하나입니다. 쿠웨이트는 현행법 하에서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중재합의와 같은 특정 사항을 강제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엄격한 편이기에, 계약상 지정된 중재합의 조항 혹은 외국관할권으로의 회부 합의 조항의 이행가능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올바른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 특히, 서명권자가 유한책임회사(W.L.L.: With Limited Liability)의 general manager혹은 주식회사(K.S.C: Kuwait Shareholding Company)의 CEO인 경우, 동 서명권자가 대리하는 법인을 중재합의에 구속시킬 수 있는 묵시적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중재조항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동 법인 대표의 명시적 동의와 같은 기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9년에 개정된 Law No. 1 of 2016(쿠웨이트 회사법)은 쿠웨이트 법인을 중재합의에 구속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명권자가 법인체를 대리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정관과 같은 법인서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tamimi.com/law-update-articles/proper-form-contract-drafting-essentials-in-kuwait/

OOSJUIO O صنباركور AL TAMIMI & CO. Jurisdiction Update **Egypt** 

# **Egypt new Custom Law**

- 이집트 국회는 2020년 9월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와 관세청(Customs Administration)의 구 관세법(Customs Law No. 63 of 1966)을 개정하는 내용의 개정 관세법안을 승인했고, 이집트 정부는 작년 11월 공포했습니다(The new Customs Law No. 207 of 2020, 이하 "신법"). 신법은 선하증권(Bills of Lading)의 양도 불가, 화물 사전신고제 도입, 선사(Carrier)의 의무 확대, 법 위반 시 처벌 강화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신법은 선사의 활동에 관한 다수 조항에서 선사에게 화물 내역 확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통관 시 신고된 내역이 실제와 다른 경우의 법적 책임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법은 선사가 이집트 세관에 등록되지 않은 수하인, 수입업체를 통해 물품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나아가 실제 수하인.수입업체가 화물 인도를 위해 세관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해당 선사로 하여금 화물을 재선적하거나 자비로 폐기토록 하는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 그 밖에 체화화물에 대한 유예기간을 기존의 4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고 해당 기간 경과 시 세관이 경매를 통해 해당 화물을 처분하거나 기타 정부기관에 무료 또는 유료로 양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신법의 주요 내용
- 통관 서류 보관 의무: 신법 제8조 및 제9조는 재화의 통관과 관련한 각종 서류, 기록, 파일 등을 화물 양하 시점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조사 결과에 따라 벌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통관 서류 보관 의무는 수출입 업체, 통관 브로커(Customs Brokers), 해운회사, 은행 등 관련 당사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 통관 서류의 장기 미보관으로 인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신법은 세관직원이 필요시 법원의 영장 없이 선적대리인 회사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 당사자의 통관 관련 서류와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적대리인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실무상 검찰의 사전승인 등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통과화물(Transit Goods): 구법은 통과화물을 운송하는 동안 발생하는 화물의 손상, 유실 또는 개조, 잠금장치(Seals)의 손상 또는 조작 등에 관한 책임을 이집트 세관에 보증금(Monetary Guarantee)을 납부한 서명인에게 부과했었는데 신법은 선사가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제25조).

- 임시 반출(Temporary Release): 신법 제34조는 법에서 정한 보증서 제출을 조건으로 관세 등 세금 부과를 보류한 후 해당 화물의 임시 반출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계, 장비, 화물 컨테이너, 기타 운송수단의 임시 반출 시에는 (여객 상업용 차량 및 요트 제외) 반출일을 기준으로 월별 2%의 요율을 적용한 관세를 연간 최대 20% 한도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해당 관세는 화물이 제3국으로 수출돼 최종 반출되기 전까지 이집트에 소재하는 기간 동안 부과됩니다.
- 신법은 비어있는 화물 컨테이너까지도 일반 화물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이집트 정부에서 이미 비준한 '컨테이너에 대한 국제 관세협약(International Customs Convention on Containers)'에 저촉되는 내용입니다.
- 사전등록제: 신법 제39조는 수입업체 또는 현지 에이전트가 화물을 선적하기 전에 이집트 세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예비 통관등록번호(Preliminary Customs Registration Number)를 부여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비 통관등록번호는 해운회사에도 공유되며, 선사에게 선하증권(Bills of Lading), 적하 목록(Cargo Manifests) 등 선적 관련 문서에 상기 번호를 표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화물의 양하가 불허되며 선사 또는 대리인의 비용 부담 하에 이집트 밖으로 반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규 절차에 대해서는 실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화물 적하목록: 신법은 제46조에서 선사가 적하목록에 화물의 실제 표기명, 수량, 컨테이너 수 등을 기입하도록 하고 이집트 세관에 등록되지 않은 수입업체가 발주한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사가 화물 관련해 제공한 정보가 부정확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선사가 화물을 재선적해 국외송출하거나 자비로 폐기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 또한, 신법 제47조는 선사 또는 운송업체의 화물 적하목록 제출기한을 기존의 선박 도착기준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적하목록상 화물의 표기 정보는 실제 송하인(Shipper)이 선사에 제공하기 때문에 선사에게 부당하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고 실무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무주화물의 처분: 신법 제66조는 경제자유구역 등에 반출되지 않은 특정 무주화물의 경우 이집트 세관이 정부기관 등 기타 기관에 판매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시켰습니다. 이는 해당 화물의 소유자가 화물의 입항 상황에 대해 통보 받고 처분 여부 결정 및 실제 처분 시까지 소요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국제적 실무에 의하더라도 그 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것으로 보입니다.

- 위반행위 처벌(Customs Contraventions): 신법 제기조는 화물 적하목록과 관련한 위반행위 시 선사에 부과하는 벌금을 60배나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이집트 세관이 지정한 지역 외의 구역에 컨테이너를 양륙하는 경우에도 선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컨테이너 터미널의 전반적인 운영은 터미널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양륙장소와 관련한 위반행위 시 처벌은 선사가 아닌. 터미널이 대상이 돼야 할 것입니다.
- 뿐만 아니라, 신법 제72조에 따라 컨테이너 잠금잠치(Seals)의 손상과 현지 통관절차 미준수와 관련한 벌금도 최대 50배 상향됐습니다.또한, 제73조는 선적서류 상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선적된 수량이 상당히 다를 경우에 대한 벌금은 기존의 2배로 조정했습니다. 위와 같은 위반행위는 화물 컨테이너 운송 시 매우 흔할 뿐만 아니라 관련 당사자가 실제로 이러한 행위를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법은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밀수(Smuggling): 구 관세법에서는 밀수(Smuggling)를 "금지된 물품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불법적인 수단을 활용해 이집트 역내.외로 재화를 반.출입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법 제77조는 에서는 관세를 일부 또는 전적으로 회피할 목적이 있거나 금지된 물품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밀수"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물품을 압수하지 못하더라도 밀수의 입증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밀수의 행위 유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거래를 목적으로 승객 편에 재화를 은닉하는 행위
- 선박 상에서 혹은 나일강, 수에즈 운하 등 인근 해역에서 재화를 폐기하는 행위
- 3. 지정된 공항이 아닌 이외의 구역에서 재화를 실은 화물을 하역하는 행위 또는 항공 운항 중 화물을 폐기하는 행위
- 운송 중이거나 세관, 물류창고, 임시기관,
   자유경제구역(무관세지역) 등에서 보관 중인 재화에 막대한 손실 또는 수량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
- 세관 또는 자유경제구역(무관세지역)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재화를 은닉하거나 처분하려는 행위

- 6. 위조된 서류 또는 송장을 제출하는 행위
- 7. 어떠한 형태로든 재화를 조작하는 행위
- 8. 금지된 물품 관련규정을 위반했거나 밀수 사실을 인지하고도 거래 목적으로 외국산 재화를 소유권을 취득하는 행위
- 9. 특별 관세규정에 따라 반출이 허가되거나 관세가 전부 또는 일부 면제된 재화를 이집트 세관의 승인, 세금이나 수수료 납부 및 수입 조건 충족 없이 소유 및 양도하는 행위
- 10. 금지된 물품 관련규정을 위반해 이미 검열된 재화를 처분하는 행위
- 11. 관세가 면제된 담배 및 주류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 12. 관세 및 기타 보증금 확보를 위해 허위로 수출하는 행위
- 13. 이미 지불한 관세 또는 기타 비용 등을 회수할 목적으로 세관에서 획득한 재화의 샘플을 조작하는 행위
- 또한 신법 제80조는 검찰 또는 법원이 밀수 피의자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해당 피고인에 대한 거래 중지를 명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신법 제80조에 따른 법원 검찰의 거래 중지 명령은 환적 화물을 포함해 공항 및 항만에 도착하는 모든 화물에 대한 해운회사의 업무를 중단시키므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이 신법은 다양한 개정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일부 조항의 경우 해운회사 및 운송업체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이에 이집트 해운협회(Egyptian Chambers of Shipping)는 현재 주요 해운회사와 함께 신법의 공표 지연뿐만 아니라 이집트 국회에 신법의 재고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tamimi.com/news/egypt-new-custom-law/

Jurisdiction Update **Iraq** 



OOSJUDO O CODU AL TAMIMI & CO.

# Companies and their administration in Iraq

- 최근 이라크로의 투자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이라크 정부는 현지에서 회사운영에 대한 법령을 재정비하였으며, 이라크에서 사업운영을 희망하는 아국기업은 해당 내용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라크에 설립 가능한 회사 유형 및 관리•운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라크에서 회사 설립 및 관리•운영에 대한 법령은 이라크 국적의 회사에 적용되는 회사법(Iraqi Companies Law No. 21 of 1997; 이하 "회사법")과 외국기업의 지사에 적용되는 법(Regulation No. 5 of 1989 concerning branches and offices of foreign economic companies and orgnisations; "외국기업 지사법")이 있습니다. 해당 회사법에 따라 이라크에서 설립가능한 회사 유형으로는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y),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합작투자회사

(Joint Venture Company), 개인사업주(Individual Venture), 2 – 5인으로 구성된 회사(Simple Company)가 있습니다. 회사 운영을 위해 위 5가지 유형의 회사는 이사회/주주총회에서 부여한 권한을 행사할 대표이사(managing director)를 선임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회(board of directors)가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나머지 회사는 주주총회(general assembly)에서 선출합니다. 회사법 상 대표이사의 국적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도 대표이사로 선임 가능하지만, 금융 등 일부 산업 군의 경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지사도 외국기업 지사법에 따라 대표이사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대표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이라크 내 회사설립 후, 전반적인 회사 관리•운영은 대표이사, 주주총회, 이사회가 담당하며, 개별 권한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상세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대표이사(Managing Director)

### 주주총회(General Assembly)

### 이사회(Board of Directors)

### 상세 권한

- 회사의 목표•전략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 이행 및 회사의 정관에 언급된 활동 수행함.
- 대표이사의 권한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이행, 회사의 연간 예산 및 전략 수립 등을 담당함.
- 대표이사는 임기 동안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고, 회사와 계약 관련하여 이해관계 충돌 시, 해당 계약은 무효로 간주되고, 대표이사는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
- 주식회사 내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회사 및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대변함.

### [주요 결정사안]

- 회사 설립 관련한 안건 논의 및 승인
- 주주 대표 선출 및 해임
- 회사의 연간 예산• 전략 검토 및 승인
- 자금조달, 부동산 담보대출 (mortgage) 등에 대해 제안
- 배당 및 유보금에 대한 의사결정
- 이사회 의장 및 이사진의 보수 결정

- 민간지분으로 구성된 주식회사(Private Joint Stock Company)의 경우,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개인으로 구성됨.
- 이라크 정부가 자본금 25% 이상을 출자하고 민간부문과 합작하여 설립한 주식회사(Mixed Joint Stock Company)의 경우, 주주총회 및 이사진 모두 이사회를 선임할 수 있음.

### [주요 결정사안]

- 대표이사 임명 및 해임
-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사안 이행
- 전반적인 예산안 및 손익 등에 대한 연간 계획 수립 및 주주총회 승인을 위해 제출
- 대표이사가 유보금, 매출, 인력충원, 투자 등 회사 연간 예산에 대해 제출한 내역 검토 및 승인
- 이사회 의장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가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 개인적으로 관여할 수 없음.

### **April 2021**

https://www.tamimi.com/law-update-articles/companies-and-their-administration-in-iraq/



# **Al Tamimi & Company News**

### Andrew Symms / James Harbridge 영입 인사 – Construction / Dispute Resolution역량 강화

저희 법무법인 알타미미는 올해 상반기에 Andrew Symms 변호사와 James Harbridge 변호사를 영입하며 건설분쟁 분야 역량을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Andrew 변호사는 건설 부문 총괄 파트너 변호사로서 카타르 도하 사무소에 상주하며, 다양한 유형의 분쟁 뿐만 아니라 건설프로젝트와 관련하여 30년 이상 자문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건설사, 항공사, 부동산 개발회사, 정부기관등 다수 공공 및 민간기업과 업무수행을 하였습니다. Andrew 변호사는 저희 법인 합류 이전에 영국계 로펌인 DWF에서 파트너로 활동하였고, 시드니 올림픽조직위원회의 법률고문으로도 활동한 바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 사무소에 상주하는 James 변호사는 중동지역에서 손꼽히는 오만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으며, 실제 오만에서 16년간 체류하며 대규모 건설프로젝트 및 건설중재부문에서 활약한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James 변호사는 건설프로젝트 외에도 오만 내 선박 억류, 소비재 결함, 상표권 침해, 프렌차이즈 계약, 각종 형사소송 등에 자문한 바 있으며, Legal 500과 Chambers & Partners로부터 "오만 시장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통찰력 있는 변호사"로 평가받았습니다.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많은 아국기업들의 해외건설사업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알타미미는 Andrew Symms 변호사와 James Harbridge 변호사 영입을 통해 건설분쟁 분야에서 아국기업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Venture Capital & Emerging Companies Law Review 발간

중동지역에서 벤처캐피털 투자규모는 2017년 6.8억불에서 2020년 10.3억불로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한국벤처투자(KVIC)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소재 중동 전문 벤처캐피털 기업에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잠재력 있는 신생 아국기업의 중동시장 진출이 용이해졌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알타미미는 벤처캐피털 투자이슈에 대해 전문적으로 자문하는 별도 팀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벤처캐피털 투자 시지적재산권 및 규제 등 법적유의사항과 중동지역 내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핀테크(fintech) 부문의 동향을 담은 출간물을 발간하였습니다. 자세한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가능하며, 중동지역 내 벤처캐피털 투자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께 유익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 원문: <a href="https://www.tamimi.com/wp-content/uploads/2021/03/Al-Tamimi-Company-Venture-Capital-Emerging-Companies-Law-Review.pdf">https://www.tamimi.com/wp-content/uploads/2021/03/Al-Tamimi-Company-Venture-Capital-Emerging-Companies-Law-Review.pdf</a>

### UAE Centennial 2071 Special Edition 발간

2021년은 UAE가 7개 토후국 연합국가로 설립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며, 동시에 UAE정부가 중•장기 국가비전인 "UAE Centennial 2071"을 공표한 해이기도 합니다. UAE Centennial 2071은 정부기관의 효율적인 운영,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주 내용으로 하는 UAE 정부의 50년 국가비전을 담은 것으로, 헬스케어, 교육, 인공지능 등 각 산업•부문별 투자 및 개발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알타미미는 매월 발간하는 중동현지 법률동향 Law Update 특별호를 발간하여 UAE 내 다양한 부문에서 활약 중인 분들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호에서는 설립자인 Essam Al Tamimi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실제 UAE Centennial 2071 주요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원문: <a href="https://www.tamimi.com/law-update/special-edition-inspiring-the-next-50-years-a-future-with-no-boundaries/">https://www.tamimi.com/law-update/special-edition-inspiring-the-next-50-years-a-future-with-no-boundaries/</a>



# **Korea Group Deals & Cases**

저희 알타미미 한국팀의 2021 상반기 주요 업무 사례를 소개합니다.

### UAE 현지 에이전트와의 DIFC-LCIA중재 사건에서 국내 최대 전자제품 제조사를 대리하여 최종 승소

한국팀의 윤덕근 변호사는 중재팀과 함께 국내최대 전자제품 제조사를 상대로 UAE최대규모의 전자제품 유통사인 현지에이전트가 DIFC-LCIA중재센터에 제기한 중재사건에서 최종 전부승소판정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본 건은 2016년 및 2017년 국내제조사와 UAE 현지에이전트 간 체결된 공급계약상인센티브 산정 및 손해배상액에 대한 분쟁으로, 계약상분쟁관할조항에 따라 DIFC-LCIA중재센터에서 중재판정부를 구성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한국팀은 현지 에이전트가 주장한 계약 관련 인센티브의 당위성과 산정 기준 등의 쟁점과 관련하여 관련직원들의 증인 진술을 확보하고 내부 문건들을 파악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고, 이에 중재판정부는 에이전트가 거래에 합의한 행위 자체가 해당 거래를 통해 별도의 인센티브 없이도 상업적 이윤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청구된 손해배상액의 경우 실제 손해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하는 등, 주요 쟁점과 관련된 에이전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관련 중재비용 역시 에이전트가 지불할 것을 판정하였습니다.

현재 본 중재 판정과 관련하여서는 두바이법원에서의 집행이 진행중입니다.

### 국내 대형건설사, 사우디국세청과의 법인세 소송 자문

송형민 변호사는 국내대형건설사의 사우디 지사와
사우디국세청과의 법인세 소송 1심 사건에서 국내대형건설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소송은 사우디
Income Tax Law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16조 3항에 기한 간주
과세의 적법성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는바, 저희 알타미미는 사우디
국세청이 간주 과세의 근거로 주장한 회계 장부 미비,
역외건설계약의 미신고, 관세청 신고 금액과 재무제표상의
수입금액의 차이 등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을 함으로써 간주 과세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우디에서 아국 기업들에 대한 무리한 과세처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승소 판결은 다른 사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사우디 국세청의 항소 제기로 인하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 국내 중공업회사, 사우디 기업결합신고 자문

송형민 변호사는 국내 대형중공업회사의 M&A거래와 관련하여 사우디 경쟁당국(General Authority for Competition)에 대한 기업결합신고에 관하여 성공적으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M&A거래는 국내 중공업 회사간의 인수 거래로서 사우디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 기업결합신고를 필요로 하였는바, 저희 알타미미는 사우디에 대해서는 기업결합신고 면제 승인을 받아냄으로써 본 M&A거래가 신속하게 진행되는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 국내 대형건설사, 아부다비 하도급업체와의 건설 소송 자문

한국팀의 하지원 변호사는 알타미미의 아부다비 건설소송팀과 함께 UAE현지 하도급업체가 국내대형건설사를 상대로 아부다비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1심 및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을 뿐 아니라, 해당 업체가 계약이행보증보험(P-Bond) 및 발주처로부터 고객사에게 받아야 하는 기성금에 신청한 가압류 신청까지 모두 방어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국내 대형건설사가 현지 하도급업체가 파이프 장비 납품, 설치 및 시범운영 등을 위해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관한 분쟁으로, 하도급업체가 아부다비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 개시되었으며, 주요쟁점은 하도급계약 상 중재합의 조항의 인용여부였습니다.

저희 알타미미는 실제 하도급계약에 서명한 당사자가 중재합의에 서명할 권한이 없고,실제 대리인이 아니었다는 하도급업체의 주장에 대해 (1) 당사자들이 계약 서명 당시 서명권자의 권한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 사실과 (2) 당시 입수한 문서 중 상대방의 정관상 명시된 이사진이 서명자로 하여금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있음을 증거로 제출하며,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중재합의로 인해 아부다비법원이 본안 소송에 대한 관할이 없음에 근거하여, 본안 소송에 부가되어 있는 가압류 사안들에 대해서도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며 소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본안 소송의 성공적인 결과로 인해, 현지 하도급업체는 실제 중재를 통해 다투어야 했던 클레임 관련하여 국내대형건설사의 합의안에 원만하게 합의하며 본 건은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 교촌에프앤비, 중동 현지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자문

하지원 변호사는 작년 연말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로 코스피 상장에 성공한 바 있는 교촌에프앤비가 최근 중동 지역 프랜차이즈 기업인 갈라다리 브라더스(Galadari Brothers Group)와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는데 자문하였습니다.

교촌에프앤비는 연내 두바이 1호점을 시작으로, 본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레바논, 요르단 등 중동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예정이며, 갈라다리 브라더스는 두바이에 거점을 둔 기업으로,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등 글로벌 식음료 브랜드를 운영 중입니다. 해당 계약 건은 현지 대표 일간지에도 소개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사 원문:

https://www.khaleejtimes.com/business/local/galadar is-fb-division-koreas-kyochon-in-fresh-tie-up

# 국내 대형해양플랜트업체, 카타르 NOC 발주 해양프로젝트 입찰 및 EPC 계약관련 자문

하지원 변호사는 알타미미 카타르 사무소와 함께 국내 해양플랜트업체에 프로젝트 입찰단계에서부터 발주처와의 EPC 계약 및 하도급 업체들과의 계약 과정에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카타르 최대규모 유전인 AI Shaheen 지역의 원유생산량 증대를 목적으로, 카타르 North Oil Company에서 발주한 약 7,253억원 규모의 프로젝트(Gallaf Batch 3)입니다.

카타르는 2022 월드컵 개최와 맞물려 각종 인프라 시설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아국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로, 저희 알타미미는 각종 건설프로젝트 입찰, EPC 계약, 하도급 계약 등 전 과정에 걸쳐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한화 SnP. 두바이 및 이라크 자회사 청산 자문

하지원 변호사는 (주)한화 무역법인 SnP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된 두바이 DMCC법인 및 이라크 자회사 청산 업무를 총괄하며, 성공적으로 두 개 회사의 청산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희 알타미미 한국팀은 아국기업을 대리하여 중동국가 내사업활동 시 가장 적합한 진출 및 설립 형태와 관련한 전략 자문, 실제 법인/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립 및 구조조정 (청산,양도 등) 업무 대행, 현지 스폰서 서비스 제공 등 기업의 설립부터 청산에 걸친 전 영역에 대해 활발히 자문하고 있습니다.

### 한화테크윈, 안면인식 (Face Recognition) 기능 CCTV유통 자문

윤덕근 변호사는 한화테크윈이 제조하는 CCTV모델에 안면인식 (FR)기능을 탑재하여 유통/판매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역내 가장 큰 시장인 UAE 및 사우디아라비아의 각종 규제 사항과 그에 따른 법률 리스크 및 헤지(면책)방안에 관련하여 자문하였습니다.

### 국내 대표 정유사에 IFAD 선물 거래소 운영 관련 자문

저희 알타미미는 작년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Abu Dhabi Global Market; 이하 "ADGM") 내 출범한 IFAD(ICE Futures Abu Dhabi) 선물 거래소 운영과 관련하여 국내 대표 정유사에 자문하였습니다. 이미 출범 당시부터 해당 정유사에 거래소 설립관련 자문을 제공한 저희 알타미미는 설립된 선물거래소의 운영과 관련한 ADGM내의 각종 규정 및 규제 내역, 거래 유형, 위반시 제재 등에 대해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부 운용인력들이 해당 보고서를 숙지하고 거래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 **Korea Group News**

### 박이세 변호사, 알타미미 중재팀 복귀

지난 2년간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에서 국제상사중재,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국제사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박이세 변호사가 2021. 4월 알타미미 중재팀으로 복귀하여 업무를 재개하였습니다. 현재 박이세 변호사는 역내 다양한 중재 사건들에 투입되어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 알타미미 한국팀, Doing Business in Egypt 한글판 발간

알타미미 한국팀은 2016년부터 중동국가별 사업 시 유의해야 할 법적내용 및 투자환경 등을 담은 현지진출가이드 "Doing Business" 시리즈의 한글판을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저희 알타미미는 중동국가와 북아프리카를 잇는 물류 허브인 이집트 포트 사이드(Port Said)에 사무실을 추가 개소한 바 있으며, 향후 이집트가 해운 및 물류 허브로 급부상함에 따라 아국기업의 이집트 내 사업 활동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류와 맞물려 저희 한국팀은 이집트 내 투자 및 사업환경을 다룬 "Doing Business in Egypt"를 국문으로 발간하였으며, 이집트 진출을 고려중인 아국기업 관계자분들께 유익한 내용을 제공할 것입니다. 본 가이드 원문은 하기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homas Snider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알타미미의 중재팀장인 Thomas Snider 변호사는 최근 대한상사중재원(KCAB)의 국재중재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위촉되었습니다. 임기는 3년으로, 해당 기간 동안 Thomas 변호사는 KCAB리스트에 등재되어 다양한 국제중재사건에서 중재인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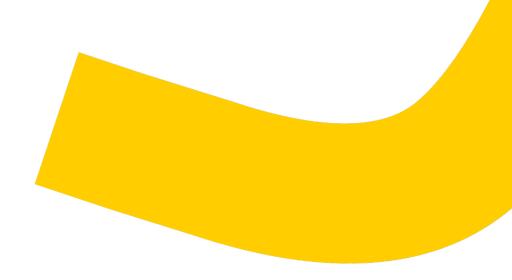
### 알타미미 한국팀, 중동국가 소재 한국대사관 법률자문가 연임

알타미미 한국팀의 변호사들은 중동국가들에 소재한 다수의 한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의 법률자문가로 활동하며, 아국 교민의 사건•사고 연루 시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원 변호사는 2015년부터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 주두바이총영사관, 주카타르대사관의 법률자문가로 활동 중이며,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사무소에 상주하는 송형민 변호사는 2018년부터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및 주젯다총영사관의 법률자문가로 선임된 이래, 올해까지 계속 연임되어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Doing Business in Egypt 국문 원문

https://bit.ly/2VE8GD1



التصيمي و مشاركوه AL TAMIMI & CO.

# in

Korea Group - Al Tamimi & Company - MENA







Al Tamimi & Company





@AlTamimiCompany

www.tamimi.com

